

제14장 경쟁

제14.1조 목적

각 당사국은 기업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의 금지, 경쟁 정책의 이행, 그리고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양해한다.

제14.2조 경쟁법과 경쟁당국

1.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하거나 채택한다.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.
2. 각 당사국은 또한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련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무역 자유화의 혜택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제14.3조 법 집행 원칙

1. 각 당사국은 경쟁법 집행에 있어 투명성,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되게 한다.
2. 각 당사국은 경쟁법 집행에 있어 당사국의 인이 아닌 인을 동종의 상황에서 당사국의 인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하게 대우한다.
3.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.
 - 가. 행위가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법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제재 또는 구제가 명하여져야 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의견이나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.
 - 나.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제재 또는 구제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에게 각국 법에 따라 행정 재심 및/또는 행정 소송을 통하여 그 제재 또는 구제에 대한 재심을 구할 기회를 제공한다.

제14.4조 투명성

1. 각 당사국은 조사 절차 규칙을 포함하여 경쟁 정책과 관련된 자국 법과 규정을, 인터넷상에서의 공개를 포함하여, 공개한다.

2.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위반을 판정하는 모든 최종 행정결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관련 사실의 조사결과와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기술하도록 보장한다.

3. 각 당사국은 그 결정과 그 결정을 이행하는 모든 명령을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. 당사국이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결정 또는 명령의 공개본은 영업비밀정보 또는 자국법에 의하여 대중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그 밖의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14.5조 경쟁법의 적용

1. 이 장은 각 당사국의 모든 사업자에 적용된다.

2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, 기업에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하거나, 또는 그러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3.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¹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 받은 기업에 대하여,

가. 어떠한 당사국도 제14.2조에 포함된 원칙에 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. 그리고

나. 양 당사국은 그러한 기업들이 제14.13조에 규정된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.

다만, 이러한 원칙 및 경쟁법의 적용이 그 기업에 맡겨진 특정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한다.

제14.6조 법 집행 협력

1.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증진하기 위한 경쟁 분야에서의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 이에 양 당사국은 통보, 협의,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통하여 협력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양국의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 이에 양 당사국은 더 나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할 수 있다.

제14.7조 통보

¹ 특별한 권리는 당사국이 객관적, 비례적 그리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,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는 기업을 지정하거나 그 수를 둘 이상으로 한정할 때, 또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기업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우위를 기업에 부여하는 때에,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된다.

1.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집행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, 그 집행활동을 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경쟁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.
2. 양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,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익에 비추어 평가를 하기에 충분하도록 초기 단계에 그리고 상세히 통보하도록 노력한다.
3. 양 당사국은 이용 가능한 행정 자원을 고려하여, 위에 규정된 상황에서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제14.8조 협의

1. 양 당사국 간의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이 제기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. 그러한 요청 시, 그 당사국은 관련되는 경우 그 사안이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.
2.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.
3. 협의의 대상인 사안에 대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비밀이 아닌 관련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제14.9조 정보의 교환

1. 각 당사국은,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규율하는 법 및 규정과 합치하는 것을 조건으로, 양 당사국 각각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2.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 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며, 정보를 제공한 그 당사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어떠한 실체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
3.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에 대한 적용 예외 및 면제와 관련된 공공 정보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. 다만, 그러한 요청은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, 그리고 관련 시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그 예외나 면제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 자유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표를 포함한다.

제14.10조 기술협력

양 당사국은 경쟁정책 및 법 집행과 관련된 각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험의 교환,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구축, 워크숍 및 연구협력을 포함한 기술적 협

력을 증진할 수 있다.

제14.11조 경쟁법 집행의 독립성

이 장은 자국의 경쟁법 집행 시 각 당사국의 독립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.

제14.12조 분쟁해결

1. 이 장의 의미에서 어떠한 행위가 무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쪽 당사국이 간주하는 경우, 사안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2.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20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아니한다.

제14.13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반경쟁적 영업행위란 다음과 같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경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업행위나 거래를 말한다.

- 가.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전체 영역 혹은 상당한 일부 영역에서 경쟁의 방해, 제한 또는 왜곡을 목적이거나 효과로서 가지는 기업 간 합의, 기업단체의 결정 및 동조적 관행
- 나.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전체 영역 혹은 상당한 일부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적 지위 남용, 또는
- 다.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전체 영역 혹은 상당한 일부 영역에서, 특히 독점적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기업 간 결합

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중국의 경우, 「반독점법」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, 그리고
- 나. 한국의 경우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

소비자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중국의 경우, 「소비자보호법」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, 그리고

나. 한국의 경우, 「소비자기본법」 제3장, 제4장제3절, 제9장 및 제10장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

사업자란 상품 생산,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연인, 법인 및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.